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 조사 후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26호, 2025.1.11. 공포, 2026.5.12. 시행)됨에 따라 조사 결과 공개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유해야생동물, 수렵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자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안전의무보험관리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관련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하나, 자력으로 포획이 어려운 경우 수렵면허 자격을 갖춘 자에게 포획 대행을 신청할 수 범위를 현재 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대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이용한 포획 대행도 가능하도록 대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종의 서식 환경
2. 개체군 변동 추이(주기별 실태조사에 따른 분포 면적 및 종수 변화)
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원인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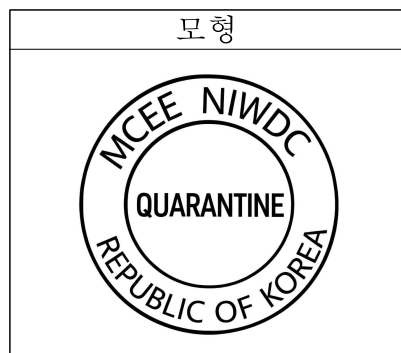
제9조제1호 본문 중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위하여 도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구”로 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를 “대

행하게”로 한다.

제44조의24제3항 중 “별표 8의10”을 “별표 8의12”로 한다.

별표 8의9의 수입검역증명표지 중 모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및 제65호의 서식 중 신청인란 중 주소 칸 다음에 재난안전 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 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관리코드

별지 제32호의 서식 중 포획방법 및 도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획방법	1. 자력포획희망 [] 2. 포획의뢰 []
포획도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신청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 및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태조사) ① (생 략) <u><신 설></u>	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립생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u> <u>1. 해당 종의 서식 환경</u> <u>2. 개체군 변동 추이(주기별 실태조사에 따른 분포 면적 및 종수 변화)</u> <u>3. 개체군 증가 또는 감소 시 원인</u> <u>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생 략)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술 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받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 ----- ----- -----. 1. ----- ----- -----

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정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라 포획 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으로 한정한다.

3. (생 략)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② (생 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포획 허가를 신청한 자가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획을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만 해당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구-----

 -----.

2. -----

 --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구--
 -----.

 -----.

3. (현행과 같음)

제31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대행하게 -----
 -----.

경우 포획을 대행하려는 사람의 수렵면허 보유기간, 수렵 경력, 법령의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 ② (생 략) ③ 법 제34조의22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 · 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u>별표 8의10</u>와 같다.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4(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별표 8의12</u>-----.
---	---